

전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안 번	건 호	2018-28
--------	--------	---------

발의년월일 : 2018.04.04.

제 안 자 : 위 원 장

담 당 자 : 이 지 은

I. 제안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II. 관계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2.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2362(2018. 2. 5.)

III. 주요내용

-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범위를 현행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개 정 전	개 정 후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세부 사항 조례 또는 학칙으로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 사항 3.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5. 학교급식 6. 그 밖에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학생)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화

개 정 전	개 정 후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 급식 4.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IV. 신 ·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 (심의사항) ④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p>	<p>제17조 (심의사항) ④ 제1항 1호, 5호, 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8호, 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그 밖에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 - - - - - - - - - - - - - .</p>
<p>제17조 (심의사항) ⑤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제17조 (심의사항) ⑤ 다음 각 호의 사항- - - - - - - - -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 급식 4.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